

해양바이오연구원 공동실험·생산장비 사용료 징수 규정

[제정 2011.6.15][개정 2012.3.16][개정 2013.1.1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 해양바이오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구축한 공동실험·생산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제정 2011.6.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의 사용승인을 얻어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정 2011.6.15>

제3조(장비구분 및 정의) ①연구원의 장비관련 운영비용 지출과 공공성 추구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장비사용료를 책정한다.<제정 2011.6.15>

②“사용자”라 함은 연구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의 대표자를 말한다.<제정 2011.6.15>

③공동실험장비”라 함은 입주자의 연구 또는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과 관련하여 연구원 내에 설비한 장비를 말한다.<제정 2011.6.15>

④“공동생산장비”라 함은 입주자의 사업화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한 파일롯트 플랜트 등 생산과 관련하여 연구원 내에 설비한 장비를 말한다.
<제정 2011.6.15>

⑤“장비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연구원 내에 구축된 공동실험장비 및 공동생산장비를 사용하여 실험·분석 및 제품을 만드는데 가동되는 장비의 사용료를 말한다.<제정 2011.6.15>

⑥“연구원전문요원”라 함은 사용자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실험·생산장비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연구원에 소속된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13.1.17>

제4조(장비사용료 산정) ①각각의 개별 장비마다 장비사용료를 산정한다.

<제정 2011.6.15>

②장비사용료의 산정 항목은 고정비인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장비이용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전력비와 변동비인 연료비, 수도비, 재료비, 기타 운영에 소요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하며, 장비특성에 따라 장비사용료 산정 항목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다.<제정 2011.6.15, 2013.1.17>

③모든 장비의 사용시간은 8hr/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특성에 따라 장비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제정 2011.6.15>

④사용시간의 산정 기본단위는 1시간(60분)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1시간(60분) 단위로 올림하여 산정한다.<신설 2013.1.17>

제5조(장비사용료) 장비사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제정 2011.6.15, 2012.3.15, 2013.1.17>

제5조의1(신규 도입장비의 사용료 산정) ①연구원 원장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사용료를 정하기 전에 도입한 장비의 사용료 산정은 [별표 4] 내지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징수한다.<제정 2011.6.15, 2012.3.15, 2013.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장비사용료는 연구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원 원장이 정한 후 미리 징수한 사용료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신설 2012.3.15>

제5조의2(생산장비별 사용시간의 산정 기준) ①최초 장비사용 시작 시간은 신청한 당일에 사용자의 입실 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연구원전문요원이 직접 작업을 수행 할 경우에는 사용 장비 사전테스트 등의 작업 준비 시작 시간으로 한다.<신설 2013.1.17>

②최종 장비사용 종료 시간은 사용 장비와 가공실의 청소 및 정리정돈 완료 후 사용자 또는 연구원전문요원의 퇴실시간과 사용자가 제조한 제품의 가공이 완료되는 시간 중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연구원 전문요원이 직접 작업을 수행 할 경우에는 제조한 제품의 가공이 완료되는 시간으로 한다.<신설 2013.1.17>

③연구원 수산가공동에서 실 사용한 개별 생산 장비에 대한 사용시간의 적용은 장비사용 개시일전에 신청하여 당일에 실제 사용한 전체 장비에 대해 최초 시작 시간부터 최종 종료 시간까지 동일한 사용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공기조화기, 유틸리티설비, 냉장실, 냉동실에 대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1.17>

④연구원 해양바이오동에서 실 사용한 개별 생산 장비에 대한 사용시간의 적용은 [별표 8]과 같다.<신설 2013.1.17>

⑤장비별 사용시간이 1일 8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점심시간(12:00 ~ 13:00)을 산정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1.17>

제5조의3(생산장비별 인건비 산정시간의 기준) ①연구원전문요원이 직접 장비를 운영 할 경우 최초 장비사용 시작 시간부터 최종 종료 시간까지의 인건비를 산정한다. 다만, 특수하게 운영되는 장비의 인건비 산정시간은 [별표 9]과 같다.<신설 2013.1.17>

②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운영 할 경우에 사전 장비 가동 및 유틸리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최대 1일 2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1시간 이하를 사용한 경우에는 1시간을 적용하며, 사용자가 19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할 경우 1시간씩 산정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7>

③사용자의 장비사용이 19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하여 산정한다.<신설 2013.1.17>

1. 19시 이후 발생한 인건비는 2배 적용
2. 주말 또는 공휴일의 인건비는 2배 적용
3. 주말 또는 공휴일에 19시 이후 발생한 인건비는 4배 적용

④인건비는 1일 8시간 이상으로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점심시간(12:00 ~ 13:00)을 산정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1.17>

⑤사용자가 장비사용 개시일전까지 생산인력을 자체 조달하지 못해 연구원에 생산인력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연봉계약액을 기준으로 월 226시간을 적용한 일일비용을 장비사용료에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제5조의4(생산장비별 수도비 산정 기준) 생산장비 별 수도비의 산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3.1.17>

제6조(장비사용료의 감면) 연구원 원장은 제5조 및 제5조의1의 장비 사용료를 징수할 때 산출된 사용료의 40%범위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으며 사용료 할인율은 [별표 6]와 같다.<제정 2011.6.15, 2012.3.15>

제7조(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①연구원 원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한 장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공동 생산장비 사용

신청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12.3.15>

②장비사용료의 미납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미납일 적용 기준일은 장비사용 신청일자로 한다. 다만, 장비 사용 예정일 이전에 미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13.1.17>

제8조(장비사용료 변경) ①장비사용료는 인건비, 유틸리티비, 장비유지비 등의 합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변동에 관계없이 통계청 고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경 분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정 2011.6.15>

제9조(이의신청) ①연구원에서 산정한 장비사용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청구일 또는 사용자가 확인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7>

②연구원 원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사용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 처리 기간 중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용자의 장비 사용 및 완제품의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부 칙[2011.6.15]

(장비이용료의 제정 및 개정) 장비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시행일) 본 장비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진흥원의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 진흥원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3.15]

이 규정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7]

이 규정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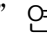

[별표 1] <제정 2011.6.15, 2012.3.15, 2013.1.17>

수산가공동 장비사용료(제5조 관련)

항 목	장비명	고 정 비						변 동 비			장비 사용료
		감가 상각비	유지 보수비	장비 이용료	인건비	복리 후생비	전력비	연료비	수도비	재료비	
1	공관공급기	5,050	505	5,050			426				11,031
2	공관세척기	3,995	400	3,995			3,669				12,059
3	육힐컨베이어	3,636	364	3,636			426				8,062
4	주액기_CAN	4,803	480	4,803			3,208				13,294
5	탈기함	5,432	543	5,432			645				12,052
6	권체기_ROUND	16,160	1,616	16,160			1,699				35,635
7	권체기_SQUARE	20,649	2,065	20,649			1,699				45,062
8	실관공급컨베이어	1,930	193	1,930			426				4,479
9	실관세척조	359	36	359			-				754
10	벨트컨베이어	539	54	539			213				1,345
11	진공펌프	786	79	786			4,320				5,971
12	공병세척기	4,826	483	4,826			3,168				13,303
13	주액기_BOTTLE	5,050	505	5,050			1,728				12,333
14	캠핑기	2,469	247	2,469			432				5,617
15	로타리자동파우치포장기	19,751	1,975	19,751			2,189				43,666
16	멸균기	28,606	2,861	28,606			288				60,361
17	교반탱크	3,052	305	3,052			432				6,841
18	이송탱크	965	97	965			-				2,027
19	Filler_pump_살균장치	4,713	471	4,713			1,267				11,164
20	스팀솔_교반_1	1,930	193	1,930			-				4,053
21	스팀솔_교반_2	1,930	193	1,930			-				4,053
22	스팀솔_조미	1,459	146	1,459			-				3,064
23	부대설비_전처리	2,615	261	2,615			-				5,491
24	날인기_유통기한	3,883	388	3,883			213				8,367
25	에어컴프레샤	2,806	281	2,806			6,336				12,229
26	스팀보일러	7,519	752	7,519			3,629				19,419
27	냉장실	2,247	225	2,247			3,053				7,772
28	냉동실	4,373	437	4,373			6,278				15,461
29	급속냉동실	7,156	716	7,156			20,246				35,274
30	공기조화기	30,408	3,041	30,408			31,329				95,186
31	유틸리티설비	10,612	1,061	10,612			-				22,285
32	진공포장기	1,000	100	1,000			2,304				4,404
33	밴드실러	694	69	694			2,304				3,761
34	진공저온추출기	3,583	358	3,583			3,168				10,692
35	냉풍제습건조기	3,817	382	3,817			2,880				10,896
36	전기오븐	3,166	317	3,166			6,912				13,561
37	복식진공포장기	2,417	242	2,417			2,592				7,668
38	X-ray이물검출기	13,278	1,328	13,278			1,037				28,921
39	수축필름포장기	2,517	252	2,517			6,912				12,197









[참고사항]

- * 사용료는 부가세 별도
- * 상기 사용료는 1일 8시간 사용 기준임.(사용 장비 사전테스트 및 세척·소독 시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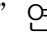
- * 고정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장비이용료, 전력비)만 포함됨
- * 변동비(연료비, 수도비, 재료비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별도 산정함
- * “” 연료비, “” 수도비, “” 필수 선택 장비임

[별표 2] <신설 2012.3.15, 2013.1.17>

해양바이오동 장비사용료(제5조 관련)

항목	장비명	고정비						변동비			장비 사용료
		감가 상각비	유지 보수비	장비 이용료	인건비	복리 후생비	전력비	연료비	수도비	재료비	
1	습식파쇄기	7,679	768	7,679			4,320				20,446
2	세척기	2,110	211	2,110			-				4,432
3	3KL_추출기	33,629	3,363	33,629			3,571				74,193
4	200L_추출기	21,398	2,140	21,398			3,283				48,218
5	UF_SYSTEM	27,208	2,721	27,208			5,760				62,897
6	1차 농축기	26,752	2,675	26,752			4,896				61,076
7	2차 농축기	15,812	1,581	15,812			6,163				39,368
8	저온진공건조기	24,878	2,488	24,878			14,688				66,932
9	동결건조기	45,680	4,568	45,680			51,840				147,769
10	건식분쇄기	20,773	2,077	20,773			10,598				54,222
11	CIP설비	8,205	821	8,205			2,131				19,362
12	분말충진기	5,741	574	5,741			1,728				13,784
13	연질캡슐	215,219	21,522	215,219			199,814				651,774
14	스팀보일러	7,948	795	7,948			3,629				20,316
15	냉각탑	2,516	252	2,516			8,640				13,923
16	에어컴프레서	11,321	1,132	11,321			6,336				30,111
17	RO_SYSTEM	19,092	1,909	19,092			5,760				45,854
18	액상포장기	4,798	480	4,798			2,016				12,092
19	분말포장기	4,444	444	4,444			1,728				11,061

[참고사항]

- * 사용료는 부가세 별도
- * 상기 사용료는 1일 8시간 사용 기준임.(사용 장비 사전테스트 및 세척·소독 시간 포함)
- * 고정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장비이용료, 전력비)만 포함됨
- * 변동비(연료비, 수도비, 재료비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별도 산정함
- * “” 연료비, “” 수도비” 필수 선택 장비임

[별표 3] <신설 2013.1.17>

실험장비 장비사용료(제5조 관련)

항 목	장비명	고 정 비						기타	장비 사용료
		감가 상각비	유지 보수비	장비 이용료	인건비	복리 후생비	전력비		
1	고압멸균기	1,950	195	975			2,880	6,000	
2	분액여두진탕기	1,770	177	885			507	3,339	
3	오버헤드 교반기	355	36	178			9	577	
4	pH측정기	622	62	311			20	1,015	
5	건조기300L	1,389	139	694			864	3,086	
6	냉장고	944	94	472			31	1,542	
7	단백질 전기영동장치	1,500	150	750			86	2,486	
8	대용량 원심분리기	9,556	956	4,778			1,958	17,247	
9	동결건조기	8,261	826	4,131			760	13,978	
10	디지털 세포파쇄기	4,722	472	2,361			432	7,988	
11	디지털현미경	2,667	267	1,333			311	4,578	
12	미량원심분리기	1,833	183	917			144	3,077	
13	미량냉장원심분리기	3,333	333	1,667			202	5,535	
14	칼피서수분측정기	4,938	494	2,469			26	7,926	
15	순환항온수조10L	1,000	100	500			691	2,291	
16	스피드백	12,261	1,226	6,131			876	20,493	
17	업소용냉장고	722	72	361			225	1,380	
18	연동펌프	4,367	437	2,183			138	7,125	
19	열판자력교반기	333	33	167			402	935	
20	자외선조사기	444	44	222			52	763	
21	자외선 핸드램프	472	47	236			7	762	
22	저온멀티룸 인큐베이터	2,389	239	1,194			2,016	5,838	
23	저울	428	43	214			2	687	
24	전기회화로5L	889	89	444			2,304	3,726	
25	전자레인지	33	3	17			749	802	
26	전자수분측정기	1,533	153	767			230	2,684	
27	점도계	3,333	333	1,667			127	5,460	
28	정밀저울	722	72	361			2	1,158	
29	제빙기	1,667	167	833			305	2,972	
30	증류수제조장치	9,889	989	4,944			30	15,852	
31	진공건조기	1,667	167	833			576	3,243	
32	진탕기	306	31	153			63	552	
33	진탕배양기	4,372	437	2,186			1,440	8,436	
34	초음파세척기	722	72	361			403	1,559	
35	초저온냉동고	7,639	764	3,819			691	12,913	
36	클린벤치	1,600	160	800			461	3,021	
37	토네이도 진탕기	333	33	167			29	562	
38	핫블록	444	44	222			144	855	
39	핫플레이트	100	10	50			288	448	
40	현미경	5,000	500	2,500			311	8,311	
41	혼합기	694	69	347			29	1,140	
42	회전농축기10L	23,311	2,331	11,656			1,958	39,256	
43	회전농축기1L	7,083	708	3,542			1,498	12,831	

44	아스피레이터	417	42	208		161		828
45	DNA 전기영동장치	239	24	119		115		497
46	조사기	106	11	53		86		255
47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도계	8,489	849	4,244		58		13,640
48	물성계	10,342	1,034	5,171		86		16,633
49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84,666	8,467	42,333		1,728		137,193
50	마이크로웨이브	10,722	1,072	5,361		899		18,054
51	분광색차계	11,000	1,100	5,500		46		17,646
52	전기회화로	911	91	456		1,498		2,955
53	굴절계	417	42	208		132		799
54	항온항습기	6,111	611	3,056		3,456		13,234
55	5L_Dual_발효기	20,882	2,088	10,441		1,440		34,852
56	가스크로마토그래피	20,882	2,088	10,441		2,304		35,716

[참고사항]

- * 사용료는 부가세 별도
- * 상기 사용료는 1일 8시간 사용 기준임.(사용 장비 사전테스트 및 세척·소독 시간 포함)
- * 고정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장비이용료, 전력비)만 포함됨
- *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 비용은 별도 산정함

[별표 4] <신설 2012.3.15, 2013.1.17>

생산장비 사용료 산정기준 (제5조의1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고정비	감가상각비	취득금액/내용연수 10년/12월/30일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의 10% 적용	
	장비이용료	장비취득가의 10%/12월/30일	
	인 건 비	일일비용 80,162원, 시간당 10,021원	사용자 직접 장비운 영 시 2시간 적용
	복리후생비	인건비의 25% 적용	
	전 력 비	장비 별 가동 전력 80% 적용	
변동비	연 료 비	유량계 검침 (사용 전·후)	
	수 도 비	공정수 사용량	
	재 료 비	원부재료 및 포장재료(실 사용량, 구입가)	
장비사용료		총 합계금액	VAT별도

- 감가상각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함(단, 24시간 가동장비는 24시간 기준 산정)

[별표 5] <신설 2013.1.17>

실험장비 사용료 산정기준 (제5조의1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고정비	감가상각비	취득금액/내용연수 5년/12월/30일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의 10% 적용	
	장비이용료	장비취득가의 10%/12월/30일	
	인 건 비	일일비용 148,083원, 시간당 18,510원	
	복리후생비	인건비의 25% 적용	
	전 력 비	장비 별 가동 전력 80% 적용	
기 타		기타 실 비용(시약, 배지 등)	
장비사용료		총 합계금액	VAT별도

- 감가상각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함(단, 24시간 가동장비는 24시간 기준 산정)

[별표 6] <신설 2012.3.15>

장비사용료 할인율 (제6조 관련)

할 인 대 상	할 인 율	비 고
졸업기업	30% 이내	도내투자실현기업
입주기업	20% 이내	
도내기업	15% 이내	
업무협약체결기업·기관	10% 이내	

※ 위 할인율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7] <신설 2013.1.17>

수산가공동 장비별 사용시간 산정기준(제5조2 관련)

번호	장비명	산정기준	비고
1	공기조화기	<p>① 시기별로 3월 ~ 6월: 최대 4시간(설정온도: 실온), 7월 ~ 8월: 최대 6시간(설정온도: 24℃이하), 9월 ~ 11월: 최대 4시간(설정온도: 실온), 12월 ~ 2월: 최대 6시간(설정온도: 20℃)로 산정한다.</p> <p>② 최대 기준시간 이하로 생산 장비를 사용한 경우는 실 사용시간을 산정</p> <p>③ 18시 이후 부터는 “①”의 최대시간에서 1시간씩 연장 산정</p>	공기조화기는 장비 사용 중 계속 가동함.
2	유틸리티설비	<p>사용자가 아래 “*”의 장비 중 하나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틸리티설비’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함.</p> <p>* 냉장실, 냉동실, 급속냉동실</p> <p>* 진공포장기(챔버식), 밴드셀러, 수축필름포장기, 날인기 등을 1시간 이내로 사용한 경우</p>	
3	냉장실	<p>① 24시간(1일)을 기준으로 실 사용 공간 면적에 따른 시간을 산정한다.</p> <p>* 1/8이하: 3시간, 1/6이하: 4시간, 1/4이하: 6시간, 1/2이하: 12시간, 1/2이상은 24시간을 적용함.</p> <p>② 보관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길 수 없음.</p> <p>③ 3개월 경과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센터에서 폐기 처리 후 장비사용료에 실 폐기처리비용을 부과함.</p>	
4	냉동실	<p>① 24시간(1일)을 기준으로 실 사용 공간 면적에 따른 시간을 산정한다.</p> <p>* 1/8이하: 3시간, 1/6이하: 4시간, 1/4이하: 6시간, 1/2이하: 12시간, 1/2이상은 24시간을 적용함.</p> <p>② 보관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길 수 없음.</p> <p>③ 3개월 경과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센터에서 폐기 처리 후 장비사용료에 실 폐기처리비용을 부과함.</p>	

[별표 8] <신설 2013.1.17>

해양바이오동 장비별 사용시간 산정기준(제5조2 관련)

번호	장비명	산정기준	비고
1	습식파쇄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2	세척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3	3KL_추출기	원료 또는 정제수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4	200L_추출기	원료 또는 정제수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5	UF_SYSTEM	원료 투입(A-12-1)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6	1차 농축기	추출액 이송 또는 탱크(A-12-2) 투입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7	2차 농축기	1차 농축액 이송 또는 탱크(B-02) 투입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8	저온진공건조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9	동결건조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10	건식분쇄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11	CIP설비	1회당 2시간 산정	
12	분말충진기	원료(분말)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13	연질캡슐	계약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생산인력 투입 시간 ~ 생산인력 퇴실 시간)	
14	스팀보일러	실 가동시간(사용 시작 ~ 사용 종료)	
15	냉각탑	실 가동시간(사용 시작 ~ 사용 종료)	
16	에어컴프레서	실 가동시간(사용 시작 ~ 사용 종료)	
17	RO_SYSTEM	1회당 2시간 산정	
18	액상포장기	원료(액상) 투입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19	분말포장기	원료(분말) 투입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별표 9] <신설 2013.1.17>

특수하게 운영되는 장비의 인건비 산정시간 기준(제5조3 관련)

번호	장비명	산정기준	비고
1	진공저온추출기	3시간(단 원료 해동, 세척 공정이 있을 경우에 3시간 적용)	수산가공동
2	냉장실	해당사항 없음	수산가공동
3	냉동실	해당사항 없음	수산가공동
4	급속냉동실	해당사항 없음	수산가공동
5	냉풍제습건조기	1. 4시간(센터전문인력이 투입, 회수, 세척 했을 경우) 2. 2시간(사용자가 투입, 회수만 할 경우) 3. 없음(사용자가 투입, 회수, 세척 했을 경우)	수산가공동
6	X-ray이물검출기	1시간(외 포장 작업 시에만 적용함, 센터전문요원은 장비 설정만 지원함)	수산가공동
7	날인기_유통기한	1시간(외 포장 작업 시에만 적용함, 센터전문요원은 장비 설정만 지원함)	수산가공동
8	수축필름포장기	1시간(외 포장 작업 시에만 적용함, 센터전문요원은 장비 설정만 지원함)	수산가공동
9	습식파쇄기	1. 실 사용시간(센터전문인력이 직접 운영 할 경우) 2. 1시간(사용자가 직접 운영 할 경우)	해양바이오동
10	세척기	1. 실 사용시간(센터전문인력이 직접 운영 할 경우) 2. 1시간(사용자가 직접 운영 할 경우)	해양바이오동
11	3KL_추출기	4시간	해양바이오동
12	200L_추출기	3시간	해양바이오동
13	동결건조기	1. 3시간(센터전문요원이 운영하고 세척 할 경우) 2. 2시간(사용자가 직접 투입하고 회수 할 경우)	해양바이오동
14	저온진공건조기	3시간	해양바이오동

[별표 10] <신설 2013.1.17>

장비별 수도비 산정기준(제5조4 관련)

번호	장비명	산정기준	비고
1	멸균기	냉각시간(분) × 0.155톤(분당 사용량) × 1,294원(톤당 요금)	수산가공동
2	3KL_추출기	2톤(정제수 투입량) × 3배(RO, 냉각수 사용량) × 1,294원(톤당 요금)	해양바이오동
3	200L_추출기	0.5톤(정제수 투입량) × 3배(RO, 냉각수 사용량) × 1,294원(톤당 요금)	해양바이오동
4	CIP설비	3톤(상수도 투입량) × 1,294원(톤당 요금)	해양바이오동